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수신 (주)에스에프에이 대표 김영민 귀하 (우18472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

(경유)

제목 시정지시서

2025. 2. 6.(목) 롯데제과 김천공장 냉동자동창고 구축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지시 하오니 이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기 바라며, 필요한 조치 후 시정기한 내 시정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번 점검·감독은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주요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이며, 귀 사에는 위 지시 내용 외에도 여러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협력 기반의 책임성 있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더욱 폭넓고 구체적으로 재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정지시서 1부. 끝.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팀장 신광철 과장 박태홍 전결 2025. 2. 7.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10261 2025. 2. 7. 접수

우 39390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302-27(임수동 92-95) 고용노동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화 054-450-3558

전송 0508-8230-0554

/ tobi@korea.kr

/ 비공개(5,6,7)

시 정 지 시 서

사업장명: 롯데제과 김천공장 냉동자동창고 구축

소재지: 경북 김천시 공단3길 94

전화번호: 041-539-95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시정지시 하오니 이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기 바라며, 필요한 조치 후 시정기한 내 시정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p> <p>- <u>적정한 온도(18oC ~ 28o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비치하시고,</u> <u>개선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p>	2025. 2. 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p> <p>- <u>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시고,</u> <u>개선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p>	2025. 2. 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p> <p>- <u>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비치하시고,</u> <u>개선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p>	2025. 2. 17.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p>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하시고, 개선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5. 2. 17.</p>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p>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개선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5. 2. 17.</p>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